

전일제수업 규정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40조(수업) ①항 및 제40조의 2에 의하여 주간과 야간에 복수의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의 다양한 학습 및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수업 선택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승인 및 공고) ①전일제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열(학과)에서는 교육과정, 교과 분담, 강의시간표 등 수업진행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학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②전일제수업을 실시하는 계열(학과)에서는 최소한 수강신청 2주전(14일)에 온라인(대학 홈페이지)을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조(교육과정 및 강좌개설) 입학당시의 승인된 교육과정을 따르며, 주간 및 야간으로 분반하여 복수강좌를 개설한다.(단. 분반 개설 인원은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)

제 4 조(수업시간 편성) 전일제수업을 실시하는 계열(학과)의 시간편성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. (단. 주간강좌는 1교시부터 8교시로 하며, 야간강좌는 9교시부터 14교시로 한다.)

교 시	시 간	교 시	시 간
1	09:00~09:50	9	18:30~19:10
2	10:00~10:50	10	19:15~19:55
3	11:00~11:50	11	20:00~20:40
4	12:00~12:50	12	20:45~21:25
5	13:00~13:50	13	21:30~22:10
6	14:00~14:50	14	22:15~22:55
7	15:00~15:50		
8	16:00~16:50		

제 5 조(수강) 입학 당시 주간 및 야간으로 분반 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전반 수강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(단. 부득이한 경우 학장의 내부결재(승인)를 득하여 전반 수강 할 수 있다.)

제 6 조(기타 운영사항) 전일제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